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완 입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지난 1월 8일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영계 역시 산재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확대 강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3. 다만, 동법이 처벌의 전제조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형벌수준이 과도한 점, 법률상 불명확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예방효과 없이 모든 기업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송폭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울산상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첨 건의서와 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건의드립니다.

별첨 : 건의서 및 조사보고서 각 1부. 끝.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 윤



수신처 :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담당 이효진 과장
협조처

팀장 김진욱

본부장 최진혁

이사 최찬호

부회장 차의환
(전결) (5/4)

문서번호 경제조사-208

우편번호 44689

전화(052)228-3072/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97(신정동)

팩스(052)271-2116 공개

2021. 5. 4 접수

<http://ulsan.korcham.net>

hyo@ucci.or.kr/일 반

건의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

2021.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건의요지】

▷ 국회는 지난 1월 8일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영계 역시 산재 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확대 강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함

▷ 하지만 동법이 처벌의 전제조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형벌수준이 과도한 점, 법률상 불명확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다수 있으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예방효과 없이 모든 기업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송 폭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상의에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처벌기준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가중처벌의 특별법 목적에 부적합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재해(1명 이상 발생)개념을 산업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부상자는 산안법보다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차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부상자 : 6개월 이상 요양자 2명이상(중대재해),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산안법)

○ 예를 들면 연내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시에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등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및 질병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함

○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중대재해 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움

○ 현행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표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수정 건의

○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의 업무는 분업화되며, 경영진은 거시적인 기업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도로 모든 중대재해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시 사례로 언급한 영국의 ‘기업살인법(2007년 제정)’의 경우도 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104건(2012년 기준) 이지만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유죄 선고 3건에 불과하며 법인에 대한 처벌일 뿐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 없었음.

□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현행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에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 현행 중대재해 발생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미취할 때 동법의 형량은 불법의 정도, 비난 가능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도함.

○ 하한형 징역형 부과는 형법상 고의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부과하는 형량임을 감안할 때 기업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행위자보다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균형성을 잃은 과잉형벌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련 법령 의무를 준수에도 면책규정이 없음

○ 현행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으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정부인증 전문업체에 제4조(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무의 의무를 맡긴 경우 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 업종 특성에 따른 면책 규정 필요함.

- 해운업종의 경우, 항해 중 좌초, 침몰,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며 선박에 최신장비 탑재 및 안전에 의한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사고 시, 경영자가 처벌받는 것은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임.

□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 시행령 제정이 7~8월로 예상했을 경우 법시행(22. 1. 27)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인력충원은 필수적인데 내년 1월까지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확보는 불가함.

○ 50인 미만 사업장은 동법 시행이 3년 유예기간을 두어 24. 1. 27일에 따라 유예기간 중 50명 미만 하청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만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며 형벌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건의사항 】

□ 처벌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법규수범자의 수용성을 높여 궁극적인 목적인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첫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

둘째, 경영책임자 개념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무주체가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

셋째,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넷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 마련,

다섯째,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범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의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21. 4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 윤 철